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891 제출연월일: 2024. 11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,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,

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 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젂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5항제1호 중 "6개월"을 "2개월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선정절차,"를 "임기, 선정절차 및"으로 한다.

- 3.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
- 4. 시장·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3조제5항 중 "제41조제5항제2호"를 "제4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제44조제3항 중 "6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제124조제2항 중 "열람·복사"를 "열람·복사(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·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
제125조제1항 중 "말한다"를 "말한다. 이하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
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조합임원,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, 해임, 임기만료,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, 이조 제1항에 따른 속기록·녹음 또는 영상자료(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만 해당한다)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3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·녹음·영상자료(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만 해당한다)를 인계하지 아니한 조합임원,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

제140조제2항제4호 중 "제125조제2항"을 "제125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~ ④ (생	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	⑤
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시장ㆍ	
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· 도조례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・	
회계사 ·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	
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	
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	
게 할 수 있다.	<u>.</u>
1. 조합임원이 사임, 해임, 임기	1
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	
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	
는 때부터 <u>6개월</u> 이상 선임되	<u>2개월</u>
지 아니한 경우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
	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
	<u>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4. 시장·군수등이 전문조합관
	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
	정하는 경우

-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 인의 <u>선정절차</u>,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43조(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) ① ~ ④ (생 략)
 - ⑤ <u>제41조제5항제2호</u>에 따라 시장·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퇴임한다.
- 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 원의 사임,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・군 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④・⑤ (생 략)
- 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, 개

	⑥
	<u>임기, 선정절차 및</u>
제	43조(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
	및 해임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♥</u>)
	⑤ 제41조제5항제2호부터 제4
	호까지의 규정
	<u>.</u>
제	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현
	행과 같음)
	③
	2개월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	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
·	(현행과 같음)
	②
	

략적인 내용, 공개장소, <u>열람·</u> <u>복사</u>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 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 략) <신 설>

제125조(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) ① 추진위원장·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(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·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)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·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

복사(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
로 열람 • 복사하는 것을 포함한
다. 이하 같다)
<u>.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
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
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공개
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
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제125조(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
계) ①
말한다. 이하 같다

역라.

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 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<u>제2항</u> 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·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 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.
- 제13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.
② 조합임원, 청산인 또는 전문
조합관리인은 사임, 해임, 임기
만료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
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
서류 및 관련 자료, 이 조 제1항
에 따른 속기록·녹음 또는 영
상자료(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
가 있은 때에만 해당한다)를 조
합에 인계하여야 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4</u>
<u>제3항</u>
<u>.</u>
세138조(벌칙) ①
1. ~ 8. (현행과 같음)
Q 제195조제9하우 일바차여 제

② (생략)

제140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의2. (생 략)
- 4. <u>제125조제2항</u>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
- ③ (생략)

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·녹음·영상자료 (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만 해당한다)를 인계 하지 아니한 조합임원,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_____
- -----.
-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- 4. <u>제125조제3항</u>-----
 - ③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주요내용								
		0	사업 / 공개하 일부 자체 ^조 이용하 근거기	시행에 도록 지자처 1인 통 1 자료 - 부재	관한 된 규정하. 에서 -합공기 공개를 함에 따	관련 서 고 있는 조합의 나사이 할 수 라, 이어	류를 (는데(제 자료 트를 있도록 관한]터넷 등 124조저 공개를 개설하여 록 시스 ¹	등을 통 1항), 위해 여 사업 템을 운	해 조합 지자처 시행지 -영 중약	등 정비 라원들에게 하 차원의 하 사 비를 하 조합원
1	제124조제7항 (관련 자료의		< 시·도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>								
	공개 등)	•	서울	부산	인천	대전	광주	경기	대구	울산	세종
			운영	명 운	운영	운영	운영	'25년 예정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
		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		_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미운영	
		-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공개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 규정 신설							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 [·]	번	조•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-	제124조제7항 (관련 자료의 공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해당 조항은 지자체가 관할 내 정비사업을 관리함에 있어, 개별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O 다만, 이미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수 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,
-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안의 내용이 시스템 구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, 지자체별로 사업 여건이 상이하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\mathbf{O}	뇘	당	0)	0
()	Οľ	~	Hλ	$\overline{\Box}$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이상훈	김용선	박용선	김헌정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상훈	044-201-3390	flyable03@korea.kr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